

군포시의회 공고 제 2019 - 19호

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 66조의2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0 월 28 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19년 11월 4일 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 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15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allnew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신금자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9. 10. 22.

발 의 자 : 신금자, 이견행, 장경민,
성복임, 홍경호, 이길호
이희재, 김귀근, 이우천

1. 제정이유
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인용한 문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지정되어 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과태료 부과·징수 및 이의 신청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며 세부절차에 대한 규정 삭제(안 제25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군포시 조례 제 호

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제7항 중 “준용하되 그 세부절차와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등 필요한 서식은 부과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의2(과태료) ① ~ ⑥ (생략)	제25조의2(과태료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<u>준용하되 그 세부절차와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등 필요한 서식은 부과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.</u>	⑦ ----- ----- ----- <u>따른다.</u>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